

경영대학원내규

시행 : 2026.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대학원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이하“학칙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전문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을 둔다.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은 과정별로 약간 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4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전문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② 특별연구과정은 학사학위와 관계없이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입학할 수 있다.

제6조(입학지원 구비서류) ① 석사학위과정 및 전문연구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학부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특별연구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해당자
4.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7조(학사운영위원회 심의)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및 입학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경영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8조(입학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한다.

- ② 지원자 중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3장 편입학

제9조(지원자격)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6조 제1항의 서류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형방법) 편입학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입학

제12조(재입학 요건) 본 대학원장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재입학자의 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제14조(재입학 제한) ①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동일 학과에 한한다.

- ② 2회 이상 제적된 자와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③ 본 대학원장은 재입학 신청자 중 제적이 장시간 지나거나, 수학능력 미달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수업 및 등록

제15조(수업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석사 : 2년 6개월
 2. 패스트트랙(4학기) : 2년
 3. 패스트트랙(3학기) : 1년 6개월
- ② 전항 제1호의 일반석사과정으로 입학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조기졸업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2. 조기졸업학기까지 학위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3. 조기졸업학기까지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한 자
 4. 조기졸업학기까지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평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자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석사과정으로 입학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편입학한 자
 2. 재입학한 자

3. 전과한 자

-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편입학자는 본 대학원에서 3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
- ⑥ 전문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 ⑦ 본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소정기간 동안 계절학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로 획득한 학점은 제2항 제4호의 조기졸업을 위한 평점평균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⑧ 계절학기의 수업시수는 정규학기 수업시수와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 ⑨ 계절학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등록)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제18조(수업연한이후 등록) 수업연한 동안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추가로 등록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4학점 미만 : 등록금의 1/2
-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제19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 수강신청 허용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석사 : 8학점
- 2. 패스트트랙(4학기) : 10학점
- 3. 패스트트랙(3학기) : 12학점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본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업방법)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정의 특성상 주간 또는 주말에 수업을 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학적변동

제21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 신청자는 행정실을 경유하여 주임교수의 확인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휴학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2.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매 학기마다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3. 전근(경기도·인천시 외 지방 발령)으로 인한 휴학은 1학기에 한하여 휴학이 가능하며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인사발령지 또는 인사팀 확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4.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으로 인한 휴학은 수용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별표 4]에 근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단, 학기개시일로부터 22일 이후 휴학자는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22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하되,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제적) ① 학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 ② 제적은 본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단, 전항 제3호에 의할 경우에는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4조(전과)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과 및 전공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1기 또는 2기 재학생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전과는 전출·입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7장 학점, 성적 및 수료

제25조(수료학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전공기초과목과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으로 한다.

제26조(학점인정) ①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성적은 C-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 대학원에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주임교수의 심의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6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전문분야 관련 강좌 이수시 2학점으로 인정하며 P(급제)/N(낙제)으로 평가한다.

④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특별강좌 이수 시 2학점으로 인정하며 P(급제)/N(낙제)으로 평가한다.

제27조(전공기초 및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①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기초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전공기초과목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학부 또는 전적 대학원에서 다음 각 호의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B학점(80점) 이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단, 학점 취득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경영학연구 : 경영학원론, 인사관리(조직행동론), 마케팅, 재무관리
 2. 경제학연구 :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3. 회계학연구 : 회계원리, 관리회계(원가회계), 재무회계
- ③ 공통필수과목은 3과목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과목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④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이수학점과 이수과목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전공별로 정한다.

제28조(타 대학원 과목이수) 본 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대학원의 과목을 8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제29조(성적평가방법) 성적평가는 학점표준화제도(A-이상 70% 이내)에 따라 성적등급을 부여하며, 수강인원 15명 미만인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제30조(재수강) ① 기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은 학수번호가 같거나 학사운영위원회가 대체과목 또는 동일 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기취득한 성적등급이 F(66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B+ 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③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④ 재수강으로 인한 학점의 취득은 이미 행한 성적경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학위자격시험

제31조(시험일자) 학위자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하되 시험일시는 본 대학원장이 시험일 3주 전에 공고한다.

제32조(시험방법) 학위자격시험은 전공필기시험으로 한다.

제33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 강의교원 중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4조(응시절차)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응시할 경우 2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제35조(합격) ① 학위자격시험의 과목당 합격요건은 100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 2과목을 합격해야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다.

제36조(응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응시 학기 이전까지 해당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단, 전과를 통해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한 재학생은 전과 후의 해당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장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

제37조(논문지도)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2학기를 마치고 연구조사방법론 또는 사례연구방법론을 이수한 자만이 석사학위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경영학과 아시아경영전공(중국어과정)의 경우 1학기를 마친 후, 석사학위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심사학기에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지도교수는 본 대학원 또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학위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 제38조(논문제출승인)**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0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일 20일전에 논문원고를 학위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사용 학위논문은 학위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심사료와 함께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논문유형 선택)** ① 학생은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론형 논문과 실기형 논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이론형 논문은 본 대학원 각 전공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실기형 논문은 본 대학원 각 전공별로 정해진 전공 실무분야에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성한 작품 또는 사례로서 실기형 논문의 의도와 관련된 배경, 내용, 기획, 기법, 주장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 또는 특정기업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40조(논문제출시기) 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2회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날짜는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1조(논문제출)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을 선택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국문인 경우는 영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영문인 경우는 국문으로 작성한 논문초록을 논문 후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42조(규정인쇄 및 부수)** ① 논문은 본 대학원장의 양식 검열을 필한 후, 인쇄하여 제40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용 제 논문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에 통과되면 20일 이내에 보관용 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1부는 심사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양식과 체제는 다음과 같다.

1. 표지
2. 표제지
3. 인준지
4. 목차
5. 수표 및 도표
6. 참고문헌
7. 논문초록

- 제44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본교 전임교원, 타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본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 주심위원 1인과 부심위원 2인을 위촉하되, 주심위원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의 제출 또는 논문내용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논문심사 및 보고) ① 논문심사는 매 학기 중에 실시하되 심사시기와 진행방법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② 논문의 심사통과 여부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 ③ 주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46조(논문대체과목) ① 전공기초과목과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8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학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 ② 논문대체과목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정한다.
- ③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논문대체 각 과목의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논문대체과목 중 B학점(80점)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해당과목을 제18조의 절차를 거쳐 재이수하여야 한다.
- ⑤ 패스트트랙 과정 중 영어전용트랙 과정으로 입학한 자가 논문을 대신하여 콜로키움(Colloquium)을 통과한 경우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제47조(논문학점)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논문학점 6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48조(학위수여대상자 선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수여대상자로 선정한다.

1. 수업연한을 완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
2. 학위자격시험 2과목 합격
3. 논문심사 통과 또는 논문대체과목 이수

제49조(학위수여) ① 석사학위는 총장이 본 대학원 소정서식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 ② 비학위과정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0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50조(학생의 의무) 본 대학원 학생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본 내규를 포함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본 내규를 포함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견책, 근신, 유기정학 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며, 무기정학, 제적 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52조(장학금) 장학금은 정규학기 재학생인 자(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취득학점 6학점 이상인 자(성적장학)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3. 총장 또는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제5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총장장학, 조교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경희가족장학 등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4조(장학금의 이중수혜) 장학금의 이중수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장학증서 발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단, 성적장학의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지급한다.

제56조(장학생 선발절차) 장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제11장 위탁학생

제57조(입학) 정부기관 등 외부 관련기관에서 매 학기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추천·의뢰 받은 경우 입학에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지원자격) 위탁학생의 지원자격은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2장 외국인학생

제59조(입학전형) ①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60조(지원자격)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입학에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지원서류) 외국인이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2조(외국인 등록) ① 본 대학원에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을 초과해서 국내 체류 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국내 체류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즉시 이를 국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4조(외국인 학생의 보험가입 의무) ① 외국인 입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자동 가입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3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 개설

제65조(목적) 본 대학원은 학교와 정부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위탁교육과정
2. 「경영대학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에 의한 계약학과 교육과정

제66조(교외교육장 설치) 학군제휴 및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다수의 등록학생이 있을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부대 내 또는 산업체 내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7조(개설과정 및 학과) 제65조의 사유로 개설하는 학위과정과 학과는 [별표 2]의 범위에 한한다.

제68조(입학전형 및 지원자격) ① 입학전형은 서류 및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지원자격은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군 간부 및 군무원 또는 산업체 임직원으로 한다.

제69조(과정운영) ① 석사과정 운영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본 대학원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제65조 및 해당 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의 학군제휴 석사과정 운영을 본 대학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업방법은 본교 전임교원 및 교강사가 해당지역 출강수업으로 진행하며 일부 과목에 한하여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④ 해당지역 수업진행 및 학사관리를 위해 교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학군제휴 협약에 의하여 협정체결 대학 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교환, 학점상호인정 등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70조(목적) ① 우수한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②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체결대학과 공동학위제도 또는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과정 및 정원) ① 개설과정은 석사과정에 한하며, 개설학과는 [별표 1]의 범위에 따른다.
② 입학정원은 협정체결대학 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으며, 그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과정운영) ① 교육과정 운영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른다.
② 협정체결대학 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환, 학점 상호인정 등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협정체결대학 간의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3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본 과정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장 직제

제74조(직제)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주임교수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 학과장과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이라도 업무수행평가 등을 통해 보직을 면할 수 있다.

- 제75조(경영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당연직 2인(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임명직 3인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본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학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간사를 별도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6조(기능)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5. 장학제도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6.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7. 교외교육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장 보칙

제77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개정내규 제25조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 ① 이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개정내규 제25조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를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별표 1]의 학위종별은 2000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개정내규 제6조 1항에 대하여는 2002학년도 후기 지원자부터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본 개정내규 제25조 1항에 대하여는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 ①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개정내규 2004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에 전문연구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구 학칙에 적용한다.

부칙

- ①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개정내규 200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4조(공통기초 및 공통심화과목)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정내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부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개정내규 시행일로부터 외국어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제43조(학위수여 결정)는 2008년 3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적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요건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43조 제4호는 2011.3.1일 이후 입학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③(편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대학원의 개설학과는 경영학과, 의료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3개 학과로 변경

하며 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 선발 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조(수업연한) 조기졸업에 관한 요건은 2013년 9월1일부터 적용하고, 제18조(휴학), 제19조(복학), 제24조(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전공시험), 제32조(논문지도) 제2항 및 제4항, 제41조(논문대체과목), 제48조(장학금) [별표3], 제49조(장학금의 이중수혜)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논문지도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2조(논문지도) 제1항은 2014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개설에 따른 경영대학원의 계약학과는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 선발 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5조(타 대학원 과목이수), 별표.3 경영대학원 장학금의 종류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전과), 제23조(학점인정), 제48조(장학금의 종류), 제51조(장학생 선발)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조(수업연한) 제4,5,6항, 제24조(전공기초및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은 2016학년도 신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조(수업연한), 별표2(계약학과 전공)은 2016학년도 신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1] 의 경영학과 전공은 2016학년도 신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학과 및 전공은 2022학년도 신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논문지도)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아시아경영 전공은 2022학년도 후기모집 신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3] 의료기관 교·직원의 장학비율 조정은 2024-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4조(논문심사위원 위촉)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영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과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 과정	경영학과 (Management MBA)	전략경영, 국제경영, 경영컨설팅, 코칭사이언스, AI비즈니스, 아시아경영, 브랜드매니지먼트, 스타트업비즈니스, 서비스경영	경영학석사	216명
	세무관리·회계학과 (Tax Management and Accounting MBA)		경영학석사	
	미디어&커머스 경영학과 (Department of Media & Commerce Business Administration)	메타버스비즈니스, e커머스	경영학석사	
	융합경영학과 (Department of Convergence management)	기술경영, 6차산업융합경영	경영학석사	
	의료경영학과 (Medical MBA)		의료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과 (Arts & Cultural MBA)		예술경영학석사	
	EMBA학과 (Executive MBA)		경영학석사	
	부동산학과 (Department of Real Estate)		부동산경영학석사	

[별표2] 경영대학원에 설치하는 계약학과

과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석사학위 과정	Management MBA (경영학과)	경영	경영학석사

[별표 3] 경영대학원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내용
총장장학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장학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납입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수업료 기준)
성적장학	A	재학생중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장학지급금액과 인원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B	재학생중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모범장학		원우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납입등록금 전액 (수업료 기준)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수업료 기준)
		- 원우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이하의 임원 - 학과(전공)별 대표 1명씩 지급 -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납입등록금의 50% (수업료 기준)
어학장학		외국인 재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 일부
목련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가계곤란자 - 기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수업료 기준)
경희가족장학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등록금전액
		의료기관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수업료의 80%
		병설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수업료의 50%
		경희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50%
경희동문장학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본교,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 및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수업료의 13%
		비학위과정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본교,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 및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수업료의 10%
공무원장학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입학하는 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계약학과장학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 중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납입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수업료 기준)
군위탁장학		학군제휴 조건에 입학하는 현직 군인	수업료의 50%
특별과정장학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경희가족이 추천한 자	수업료의 10%

※ 장학금 지급 시 입학금 제외(단, 별도로 명시된 경우 입학금 포함)

※ 성적장학 : 일반석사과정 재학생에 한함(외국인, 계약학과, 학군제휴, 패스트트랙 과정 제외)

※ 상기 별표3에 표기되지 아니한 장학금의 세부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정함

※ 외국인, 계약학과, 학군제휴, 패스트트랙 과정 및 전문연구 과정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교·직원의 장학비율 조정은 2024-2학기 재학생(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키로 하고, 소급적용은 불가함

[별표 4] 등록금의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은 관계 법령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은 휴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평일을 해당기간의 말일로 한다.